



공정거래법 가이드북

Fair trade law Guidebook



주요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_관한_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공정거래법 가이드북

Fair trade law Guidebook



Contents

<hr/> 1. 공정거래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06
<hr/> 2. 용어의 정의	07
<hr/>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08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08
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	08
다.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시 주요 고려요인	09
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1
마. 위법성 요건(부당성 판단)	13
바. 위반 시 제재	13
<hr/>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4
가. 부당한 공동행위란	14
나. 유형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5
다. 합의의 추정	21
라. 위반 시 제재	22

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3
가. 불공정거래행위란	23
나.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4
다. 위반 시 제재	28
6.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29
가. 부당지원행위란	29
나. 용어의 정의	29
다. 유형별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30
라. 위반 시 제재	35
7.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36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36
나.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36
다. 위반 시 제재	37
8.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민사적 법집행 :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38
가.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	38
나. 손해배상책임	38
다. 손해액의 인정	38

공정거래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법 제1조).

제1조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통해 기업은 소비자들로부터 기업의 가치를 평가 받으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역외적용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법 제3조).





- 가. “사업자” :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봅니다(법 제2조 제1호).
- 나. “사업자단체” :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2호).
- 다. “시장지배적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법 제2조 제3호).
- 라. “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4호).
- 마.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5호).
- 바. “임원” : ① 이사, ② 대표이사, ③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④ 감사, ⑤ ①~④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⑥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6호).
- 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상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20호).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시 주요 고려요인

1) 시장점유율

가) “(해당 사업자의 해당상품 국내 총공급액 또는 구매액 / 해당상품 국내 총공급액 또는 구매액) X 100”으로 계산합니다.

나)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가)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단,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3)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 유무,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입지조건, 원재료조달조건,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제품차별화의 정도, 수입의 비중 및 변화추이, 관세율 및 각종 비관세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생산능력,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경쟁사업자의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①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평균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②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수출가격이나 수입가격(관세, 운송비 등을 감안한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 여부, ③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④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판매 및 구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 ⑤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한지 여부, ⑥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6)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①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나 용역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②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여부,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7) 시장봉쇄력

(원재료 구매액이나 공급액 / 원재료의 국내 총구매액이나 국내 총공급액) X 100으로 계산한 비율이 위 3. 다.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자금력

자금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율,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9) 기타 고려요인

사업자가 거래선을 당해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에게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당해 사업자의 신기술 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유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위 2. 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위 3.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 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은 아래 기술한 내용과 같습니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 3)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 4)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5)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7)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8)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9) 자사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 대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10)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11)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 12) 다른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13)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14)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15)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16)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17)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18)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19)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부품, 부자재 포함)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20)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21)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2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마. 위법성 요건(부당성 판단)

- 1) ① 주관적 요건 :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② 객관적 요건 : 경쟁제한효과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2) 다만, 현실적으로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났었음이 입증된 경우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바.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법 제7조, 제125조)

- 가) 금지명령 :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나) 중지명령 :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라)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과징금(법 제8조)

- 가) 관련매출액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벌(법 제124조, 제128조)

- 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란

- 1) “담합, 카르텔” 등의 용어로 혼용되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가격·거래조건 등을 일정하게 합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2)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자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됩니다.
- 3) 그리고 어느 한 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는 어느 한 쪽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어느 한 쪽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4) 또한, “합의”는 일정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 유형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법 제40조)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합니다.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시 세제 제조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

2)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조건”이란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예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나. 유형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법 제40조)

예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5)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설비 총량 또는 신설, 증설 규모를 정하는 행위,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6)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 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별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또는 규격을 할당하는 행위,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 또는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
하는 행위, 이를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판매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소위 “입찰
담합”)

가) 입찰가격담합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
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결정”이란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
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

나)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
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당공동행위
에 해당합니다.

나. 유형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법 제40조)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높은 낙찰 희망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 수주희망사업자가 협조사업자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사업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들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공사를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사업자가 다른 입찰참가사업자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사업자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특정사업자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다)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 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결정”이란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라) 수주물량 등의 결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결정”이란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업자가 공동으로 모임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희망물량을 일부로 적게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마) 경영간섭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나. 유형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법 제40조)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정보교환이라 합니다)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관련 정보(이하 ‘경쟁상 민감한 정보’라 합니다)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합니다.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사업자의 정보가 중간 매개자를 거쳐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에게 일반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공표 또는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또는 공개매체의 성격 및 이용자의 범위, 접근 비용의 유무·수준 및 경제주체별 차등 여부, 공표 또는 공개의 양태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자 간 비공개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한 후 그 정보를 사후에 공개적으로 공표 또는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교환 행위로 봅니다.



다. 합의의 추정 (법 제40조)

-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간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2) 이에 법에서는 나. 1) ~ 9)의 부당공동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①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 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또는 ② 나. 1) ~ 9)의 부당공동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9)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나. 1) ~ 9)의 부당공동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시 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시 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시 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시 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여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예시 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시 1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2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3) ②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가) 2 이상의 사업자가 ②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가격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해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합니다.

나) '행위의 외형상 일치'의 판단기준은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구매대체의 정도,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교환된 정보가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정보의 종류 및 성격, 정보가 교환된 시점,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라.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법 제42조, 제125조)

가) 금지명령 :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 중지명령 :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 기타 :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과징금(법 제43조)

가) 관련매출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벌(법 제124조, 제128조)

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불공정거래행위란

- 1)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 강제, ⑥ 거래상 지위 남용, ⑦ 구속 조건부 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즉,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되며, 여기서 “공정거래저해성”은 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언급하는 “부당하게”와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 3) 또한, “공정거래저해성”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 4)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5) “불공정성”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고,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6) “우려”의 의미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합니다.
- 7) 한편,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시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로 구체화되는 바,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 8)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행위를 한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나. 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법 제45조)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거절”이라고도 합니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그 밖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은 사례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별적 취급”이라고도 합니다.

가)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소금제조사가 A, B 두 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A대리점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고 B 대리점에서는 100%로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대리점에 비해 기존 대리점에게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소금공급비율도 적게 하여 차별 취급한 사례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쟁사업자 배제”라고도 합니다.

가)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치약제조사가 경쟁치약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한 사례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고객유인”이라고도 합니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나. 유형별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법 제45조)

-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강제”라고도 합니다.
- 가)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나)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에게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다) 그 밖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기 예식장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

-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고도 합니다.
- 가)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나)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다)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라) 불이익제공 : 위 가) ~ 다)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마)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유명 브랜드 전자제품 제조사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황이나 상대방의 주문의사에 상관없이 과대한 물량을 공급한 사례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속조건부거래”라고도 합니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한 사례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활동 방해”라고도 합니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 거래처 이전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 위 가) ~ 다)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공급하는 의약품의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레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다.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법 제49조, 제125조)

가) 금지명령 :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나) 중지명령 :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다) 기타 :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징금(법 제50조)

가) 관련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벌(법 제125조, 제128조)

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위 5. 나. 4), 5), 6), 8)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 부당지원행위란

부당하게 ①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 인력,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용어의 정의

- 1) “지원주체” :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
- 2) “지원객체”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다른 회사
- 3)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4) “정상가격”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
- 5) “지원금액”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
- 6) “지원성 거래규모”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거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의 규모
- 7) “부당성”의 판단 : “부당성”을 판단할 때,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따라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 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합니다.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다. 유형별 부당지원 행위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1)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나) 그리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2 지원주체가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3 지원주체가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4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원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5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6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하게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이하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나) 그리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예시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2** 지원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3** 지원주체가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4**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 사채를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5**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6**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7**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8**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9** 지원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에 지원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10**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크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다. 유형별 부당지원 행위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예시 11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12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3) 부당하게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그리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2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3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4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4)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그리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



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예시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2**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3**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4** 지원주체가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5**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익계약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5) 부당하게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나) 그리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예시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 예시 2**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다. 유형별 부당지원 행위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또는 일부를 지원객체로부터 미회수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3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6) “부당하게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그리고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시 1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2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시 3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7) 부당성 판단기준

가)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라)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법 제49조, 제125조)

- 가) 금지명령 :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나) 중지명령 :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라)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과징금(법 제50조)

- 가) 평균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 과징금의 부과는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벌(법 제124조, 128조)

- 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회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 1)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여기서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공급)가격 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포함합니다.
- 3) “강제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자체가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합니다.
- 5)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6)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나.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

- 1)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 2) 유통업자가 경쟁 유통업자의 가격할인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유통가격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실시된 경우”
- 3)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진 제조업자가 유통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유통업체들이 동조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설정된 최고가격 수준으로 수렴한 경우”



다. 위반 시 제재

1) 시정조치(법 제49조, 제125조)

가) 금지명령 :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 중지명령 :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 기타 :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과징금(법 제50조)

가) 관련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민사적 법집행 :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가.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법 제108조)

위 5. 나. 1) ~ 8)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 (법 제109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 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4. 나. 1) ~9)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법원은 위 2) 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사업자의 재산상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 손해액의 인정 (법 제115조)

법원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가이드북

발행처 화승코퍼레이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장천빌딩 11층

발행일 2024년 2월

담당 자산 / 법무팀 박신영 변호사
Tel | 051-717-7365
Fax | 051-717-7303
E-mail | shinyoung.park@hscorp.com



HWASEUNG